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사항 : 요약표

국가	2018	2019	2020	상세 내용
○ 라벨링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개정('16년5월) ○ 라벨링 적용기간 * 연간판매실적 1,000만달러 이상 : 2018.7.26.~2020.7.26. * 연간판매실적 1,000만달러 미만 : 2019.7.26.~2021.7.26 		-	6
EU	○ 식품 원산지 표기 의무		○ 식품의 원산지와 주재료의 출처 표기 의무화 및 구체화 ('20년4월1일부터 발효)	7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식품표시 대상 물질에 아몬드 추가('19.9.19~) - 「아몬드」를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포함시켜 제품 패키지에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적용('20.4.1~) - '15.4.1일부터 모든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시행되었으나, '20.4.1일부터 의무화 적용 	9
	○ 식품표시법 개정('18.12.14)		2021년 6월까지 의무화	
	- 식품안전위반사례 발생시 취급업체로 하여금 회수사례를 지자체를 통해 정부에 보고			
	- 식품 관련 사업자등이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			
중국			○ 보건식품표시 경고 용어 지침 개정 ('20년1월1일부터 시행)	11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원료 및 제품 의무 표시(2015년시행) ○ 5가지 품목 :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규정 개정('20.7~) ○ 2020년 7월 시행 	12

국가	2018	2019	2020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가지 품목 * 기존(5가지) + 6가지 품목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 라벨링 개정 * 라벨링에 '경고' 문구와 기타 문구는 잘 보이게 표기해야 함 ○ 영유아식품 라벨링 개정 * 식품의 연령, 품목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허위, 거짓 표기·광고 문구 포함 불가 ○ 과채류 라벨링 개정 * 라벨링은 반드시 태국어로 표기 (외국어 병행 가능) * 수입업체 이름 국적 표기 등 		13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라벨링('20년1월) - 유기농 제품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에 관한 개정 - 러시아에서 허가 된 인증 기관에 의해 취득 * 인증기관 : 1기업(Posaccreditatio) 	15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7.17부터 ○ 소금, 설탕,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 전면 에 경고 라벨 표시 		16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고형식품과 음료수 ○ 칼로리, 소금, 설탕과 지방의 기준치를 규정하고 설정된 기준치를 넘는 상품포장에 해당 성분이 다량 함유되었음을 표시하는 '경고라벨'을 부착해야 함 * '16.6 개정(1단계) → '18.6(2단계) → '19.6(3단계) 			17

국가	2018	2019	2020	상세 내용
○ 관세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KFTA 협정 세율 적용 *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제출 시 대부분의 품목 0% 적용 			-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 적용 * 민감·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품목은 AK Form 제출시 대부분 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적용 및 AK3 코드 신설 *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 상호 대응세율 조정에 따른 태국 측 관세율 조정 * 주요품목: 딸기, 양송이버섯 등 		18
○ 통관절차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행정부 FIRS을 통해 등록 * 두바이 행정부(Dubai Municipality)의 통합식품포털, Food Import & Re-expor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ZAD 포털을 통해 등록 * ZAD 홈페이지 : http://zad.gov.ae 		19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 단일창구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 시행 ○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통관 등 무역과 관련한 수속을 온라인으로 통합 			20
○ 검역제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식물검역강화('18.10.1~) -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산 식물에 대해 모두 폐기처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19.11.30) - 주요품목 : 파프리카, 고추류, 참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19.10.11~) - 한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장 급증 원인이 조개 젓갈류로 판단되어 한국 식약처가 조사 발표한 A형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정지 조치 			

국가	2018	2019	2020	상세 내용
대만		○ 대만, 신선 키위 과일 수출 검역 요건 마련 (12.3)		23
베트남		○ 식품 첨가물 법령 개정('19.10.16) - 관리 요구사항 기재 * 개인 및 기업 등의 단체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명시함 - 6조 식품군 분류 설명 추가 * 신규 법령의 경우 식품군 코드 사용에 대한 설명 기재 (예시 : 첨가물 사용범위가 상위코드에 적용될 시,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하위그룹에서도 사용가능) - 제품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양의 최소치 별도 명시 * 자국민 건강 증진에 초점		26
태국	○ 한국산 생과실 8품목 검역요건 강화 * GAP 인증받은 재배지 생산 생과일만 수출가능 * 8품목 : 복숭아, 포도, 참외 (멜론), 사과, 배, 단감, 딸기, 감귤			27
인도 네시아	○ 수출 가능한 신선 품목 22개로 제한('19.1.24) - 인니 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16.2.17시 행) 시행 시 수출금지 품목 없었음 - 동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둘 중 하나를 인니 농업부에 승인 받아야 수출 가능 ①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 한국은 실험실 승인받아 수출(유효기간 3년) - '19년 갱신 통보와 함께 수출가능품목(22개) 통보			33
○ 비관세장벽				
일본	○ 한국산 수산물 모니터링 강화(19.5.30~10.30) - 모니터링 검사 비율 확대(20→40%) - 주요품목 : 광어, 조개류 등		모니터링 검사 강화종료	36
	○ 한국산 김치류 피클제품 분류(2019~) - 한국산 김치에 첨가된 초산 함유량이 0.5% 초과할 경우 피클로 분류 되 종래 9% 관세(김치)에서 12%(피클)로 상향 부과			

국가	2018	2019	2020	상세 내용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불순물(금속 오염) 2018년 개정안 ○ 홍콩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7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식품) 2019년 11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식품) 2020년 11월 시행 	38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잔류농약 허용치 개정(11.6) 		39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기능 식품별 구비서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P, Viet Gap 인증서 및 베트남 보건부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빈번 ○ 설탕 쿼터제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 쿼터제에 대한 비용,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음('20년 초 예상) 		40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지정 과채류(48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서(공증본) 제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GMP기준 부합하는 품질관리 인증서 제출(IAF 가입 기관에 발급하는 GAP, HACCP, ISO22000:2015) * 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인증서(GAP등) 제출필수(사본불가) 		41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16일 까지 ○ 의무여부 : 권고사항 ○ 할랄인증 기관 : MUI ○ 할랄인증 유효기간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17일 이후 ○ 의무여부 : 5년 유예 기간,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할랄인증 기관 : BPJPH(할랄인증청) ○ 할랄인증 유효기간 :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규 할랄 인증기관인 BPJPH에서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나 세부 시행 규칙(인증신청 사이트, 인증 비용, 할랄로고 등)이 나오지 않아 시행 지연 ('20년 초 예상) 		43

2. 수입제도 개정 상세내용

(미국) 식품 라벨링 표시 개정사항

- 2016년 5월 FDA에서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개정안’ 발표하면서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링의 준수 기한 연장
 -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 식품 제조업체 : 2018. 7. 26부터 2020. 7. 26까지
 -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 식품 제조업체 : 2019. 7. 26부터 2021. 7. 26까지

<현재까지의 라벨링 예시>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3 cup (55g) Servings Per Container About 8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Calories from Fat 72
% Daily Value*	
Total Fat 8g	12%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2%
Dietary Fiber 4g	16%
Sugars 1g	
Protein 3g	
Vitamin A	10%
Vitamin C	8%
Calcium	20%
Iron	45%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개정된 라벨링 예시>

Nutrition Facts	
1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2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 Daily Value*	
3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4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5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35mg 6%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출처 : 미국 FDA

1 Serving(제공량)

- 크고 굵게 표시해야 함
- Serving size는 과거와 달라진 현대인의 식습관 및 실제 음식 섭취량을 반영해야 함

2 Calories(칼로리)

- 크고 굵게 표시해야 함

3 Fats(지방)

- 칼로리 부분에서 “Calories from Fat” 부분은 삭제됨

4 Added Sugars(설탕 함유량)

- 신규 표기 항목으로 생산이나 포장과정에서 첨가된 설탕량 뿐만 아니라 시럽이나 꿀, 야채 및 농축 과즙 주스에 함유된 설탕량까지 포함되어야 함
- 함유량은 그램(g)으로 표기하며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DV)도 함께 표기함

5 Nutrients(영양소)

- 비타민D와 칼륨(potassium)은 필수 표기 영양소에 포함되었고, 비타민A와 C는 필수 표기에서 제외됨
- 함유량은 밀리그램(mg)이나 마이크로그램(mcg)으로 표기하고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DV)도 함께 표기함

6 Foodnote(식품사항)

- 식품사항은 라벨의 제일 하단에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
- 식품사항에는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DV)가 일일 영양섭취 권장량을 파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함

(EU) 식품 라벨링 표시 개정사항

□ 변경사항

- 식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The country of origin / The place of provenance)와 주재료의 출처(Origin of primary ingredient)가 다를 경우 반드시 둘 다 표시해야 함
- 주재료는 해당 식품에 50% 이상 함유된 재료를 말함
- 변경된 라벨법은 2가지 경우에 해당됨
 - ①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문자, 그림, 로고 등으로 포장재에 표기했지만, 주재료의 출처가 포장에 나타난 국가/지역과 다를 경우
 - ② 특정 국가/지역을 상기시키는 식품의 주재료가 해당 국가/지역과 다를 경우
 - 예1) 프랑스산 밀로 제조된 이탈리아 파스타를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포장지에 넣어 판매할 경우, 주재료의 출처(Origin of primary ingredient) 프랑스로 표기해야 함
 - 예2)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문자, 그림, 로고가 표시된 식품의 실제 원산지가 포르투갈일 경우 The country of origin은 포르투갈로 표기해야 함. 만약 원재료가 포르투갈 것이 아니고 모로코의 것이라면 Origin of primary ingredient는 모로코로 라는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함
 - 예3) 스페인산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수프, 벨기에 초코렛을 입힌 비스킷 주재료는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조국을 표기해야 함
- 다음의 사례는 해당 법에 해당이 되지 않음
 - Made in 이외에 manufactured in, produced in 등으로 표기된 것
 - 특정지역에서 인기가 있는(예. 25 years German' s favorite product)
 - 특정지역에서의 사업자 역사를 나타낸 경우(예 Created 1880 In Toulouse)
 - 식품 사용법을 여러나라 국가 언어로 나타내고 약자나 국기를 표기했을 경우
 - 식품업체 회사명에 특정 국가/지역이 포함될 경우 등
 - 식품의 재료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없는 경우 (예.멀티비타민주스, 뮤슬리 등)
 - 요리 또는 주재료가 고유명사로 국가/지역명이 들어갈 경우 (예.텍사스 바베크 소스, 구다 치즈, 까망베르 치즈, Brussels sprouts, London Gin 등)
 - 'Style' , 'Type' , 'Inspired by' 등으로 표기한 경우 (예.American style beer)
- 주재료만 표기하고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국을 표기해야 함
- 주재료의 원산지 국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경지역일 경우 적어도 ①EU/ Non EU, 또는 ②지역명을 기재함 (예. Alps, Pyrenees, Middle East, West Africa, Black Sea, Nordic Sea 등)
- 주재료가 육류(돼지, 소, 닭, 양, 염소) 또는 꿀일 경우 포장한 곳, 냉장 및 냉동한 곳, 탄생지, 도축지를 표기해야 함.
- 주재료의 출처가 여러곳일 경우 공동 표기한다. (예. Chocolate from Belgium, France, Swiss, Rice of Meddle East and North Africa)

- 주재료의 주재료까지 표기하는 것은 업체의 자유임 (예. 피자에 들어간 치즈 원산지 또는 치즈를 만든 우유 원산지 중 택 1 표기 가능)

표기법

- (폰트) 해당 글자는 높이가 1.2 mm 이하여서는 안되고, 주재료의 출처는 원산지를 나타낸 글자 높이에 비해 75% 이상이 되어야 함. (아래 그림의 6번의 높이가 1.2mm 이상)



- (표기장소) 주재료의 출처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한 곳과 같은 곳에 표기해야 함

신규 법안 발효 및 이전 라벨의 유통 문제

- 새로운 라벨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전에 라벨을 부착한 상품은 재고 소진 시 까지 유통 판매 될 수 있음

출처

https://ec.europa.eu/info/news/commission-adopts-new-rules-labelling-origin-primary-ingredients-food-2018-may-28_en

https://www.fooddrinkeurope.eu/uploads/publications_documents/Joint_Guidance_on_the_origin_indication_of_the_primary_ingredient_WEB.pdf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A32018R0775>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labelling_legislation_infographic_food_labelling_rules_2014_en.pdf

[일본] 라벨링 표기

□ 식품표시 기준 일부개정

-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식품표시법 일부를 개정하여 식품안전위반사례 발생시 취급업체로 하여금 회수사례를 지자체를 통해 정부에 보고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함(2018.12.14. 식품표시법 제97호 및 식품위생법 개정)
- 주요 개정 내용(2012.6월 의무화)
 - 동법 개정을 통해 식품 관련 사업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신고대상 식품표시기준위반은 알레르기 물질 및 소비기한 등의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품회수 사례 발생시 행정기관에 신고가 필요함(식품표시법)
 - 식품위생법 위반원인이 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나 제조라인의 기계설비가 파손되어 제품에 혼입된 사례 등을 포함함(식품위생법)
 - 그동안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안전위반 사례 게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업체가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등 운영이 제각각이었음
 - 전파경로 : 식품업체 → 지자체 → 소비자청 및 후생노동성 →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전파
- 적용시기 : **2021.6월까지 의무화**이나 현재에도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위반 사례 발생시 신고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자료원 :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mendment_001/

□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화('20.4.1 ~)

-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
 - 의무표기 :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물섬이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트롤, 비타민·미네랄류

□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아몬드를 추가('19.9.19 ~)

- 일본 소비자청은 「아몬드」를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포함시켜 제품 패키지에 표기하도록 추가하였으며, 그 외 식품표시에 관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강화된 내용을 통지함(9.19자)

항 목	개정내용(신)	개정전(구)
의무표시사항 (제 14)	종류별 : 유제품 유산균음료	종류별 : 살균유산균음료(유제품)
알레르겐 표시 2. 표시대상 (1)특정원재료	땅콩(피넛츠)	땅콩
(2)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	아몬드(추가) 등 21개 품목	전복등 20품목

※ 자료원 :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act_190919_0005.pdf

□ 게놈기술 응용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 견해 발표



- 일본 소비자청은 게놈기술응용 식품이더라도 유전자 변형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현 단계에서는 식품표시기준 대상외 라는 견해를 발표함
 - 현재, 게놈 편집 기술을 응용한 식품중 유전자 변형 기술(GMO)에 해당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패키지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나, 외래 유전자 등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게놈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종래의 육종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판별 불가능한 이유인 때문임
- 소비자청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일본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게놈 편집기술 응용식품에 대해서도 모두 제품에 해당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자료원 :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genome/

[중국] 보건식품표시 경고용어 라벨링 개정사항(20.1~)

-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약품을 대신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어를 최소포장지(용기)에 명시해야 하고 경고어의 글자칼라는 배경과 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글자체는 한자 black letter(character)여야 합니다. 또한 경고어가 차지하는 면적은 소재 포장면의 20%보다 작아서는 안됨
- 주요 전시면의 표면적이 100평방센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고어의 높이는 6밀리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됨.
- 보건식품의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고 년도는 네자리수, 월과 일은 두자리 수로 표기해야 하며 레이저로 식각해야 하고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칼라와 배경색은 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함.
- 시고전화번호와 ‘보건기능’ 이란 표기어의 글자체가 동일해야 하고 신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명시
- <보건식품표시 경고용어 지침>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

구 분	2019	2020
보건식품 라벨링(예시)		

[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품목에 따른 라벨링 개정사항('20.7~)

- 식품약품관리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20.7~)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2020년 7월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함
 - 따라서 새우, 계 등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기존 5가지 식품원료 및 제품과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 식품 원료 및 제품은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표시해야 함

기존(5가지)	변경(11가지)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표시용 문구에 관하여 기존의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음(本产品含有OO)” 또는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음(本产品含有OO, 不适合对其过敏体质者食用)” 이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내용물을 전부 “제품명”에 명기하는 방식을 요구함
-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에 근거하여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하여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에 처함.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464만 원)의 벌금에 처함

<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품목 확대 규정>

(영문) <https://www.fda.gov.tw/ENG/lawContent.aspx?cid=16&id=3113>

(중문)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4294>

(태국) 건강식품, 영유아, 과채류 라벨링 개정사항

□ 기본 표시사항

-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총 15가지이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또한 라벨에 표시해야 함.

구 분	필수 / 선택	샘플 사진
1) 제품명	필수	
2) 식품 시리얼 번호	필수	
3) 수입자 정보	필수	
4) 식품용량	필수	
5) 재료정보	일부 유형 생략 가능	
6) 알레르기 정보	필수	
7) 식품첨가제	필수	
8) 인공조미료	필수	
9) 유통기한	필수	
10) 경고문	필요시	
11) 보관방법	필요시	
12) 섭취방법	필요시	

※ 출처: 보건부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No. 367), (No.383) B.E.2560(2017))

□ 건강기능성 식품 라벨링 규정

○ 경고문 및 기타 문구

- “경고” 라는 문구는 1.5mm보다 크기가 커야 하며 사각형 글상자 안에 입력해야 한다. 글자 색은 글상자 배경색과 대조를 이뤄야 하며 글상자 틀의 색깔은 라벨 색깔과 대조를 이뤄야함
- “아기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보이는 글자 크기로 적어야함
- “5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있게 늘 적당한 양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보이는 글자 크기로 적어야 함
-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체로 사각형 글상자 안에 적어야 한다. 글자 색깔은 글상자 안의 배경색과 대

조를 이뤄야 하며 글상자 틀의 색깔이 라벨 색깔과 대조를 이뤄야 함.

□ 식품의 허위, 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

- 유아 식품 광고는 영아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됨
-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링(예시)

표기 항목	표기 내용		라벨링 사진 (좌: 우유 / 우: 분유)
품명	Hi-Q1 plus		
원료	우유 56% 탈지유 2.1% GOS시럽 0.8% 팜유, 카놀리유, 코코넛유, 옥수수유 0.61%	무기질 0.07% 비타민 0.04% 프락토올리고당 0.04% DHA 0.0137% 타우린 0.01%	
제조업체 (수입처)	Dumex Thailand Co., Ltd.		
영양표시	지방 3.5g 콜레스테롤 10mg 단백질 3g 탄수화물 8g 당류 5g 나트륨 40mg 포테시움(칼륨) 150mg		

- 태국 FDA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 강조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함
 - 모유는 영아를 위한 최고의 영양분임
 - 의사, 간호사 또는 식품영양 전문의에 의해 추천된 식품
 - 정확하지 않은 조제 및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음
- 위의 3가지 내용은 제품의 바탕색과 색깔 대비를 두고 가로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 과일, 채소류 수출 위한 인증서 제출 및 라벨링 : '19년 8월 25일부터 시행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식품의 라벨링은 반드시 태 국어로 표기해야하며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여도 됨
- 라벨링 표기에 수입 과일 및 채소의 경우 수입업자라 표기하고 수입업체의 이름과 국적도 함께 표기하여야 함
- 생산지 번호 혹은 수입지 번호는 사각형 틀 안에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기입하며 숫자 크기는 2mm보다 작으면 안됨
- 과일 및 채소 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기관담당자에게 보여줄 라벨이 준비되어야함

[러시아] 유기농 식품 라벨링 추가사항('20.1~)

- 러시아 연방법 “유기농 제품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에 관한 개정”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유기농“으로 표시되는 모든 제품에 러시아에서 허가된 식품 라벨링을 추가 하여야 함
 - 유기농 제품 생산의 적합성 확인은 기업들의 자발적 인증의 형태로, 생산자가 직접 검증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로고 발급이 가능
 - 적합성 확인은 러시아에서 허가 된 인증 기관에 의해 취득 가능
 - * 현재까지는 단 1기업(Rosaccreditatio)
 - 2020년도에 시행되는 유기농 식품 라벨링 추가 법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제공된 인증 절차로 대체 불가
 - 라벨링 : 키릴 문자와 라틴 문자로 “유기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녹색 배경의 흰색 시트
- <유기농 식품 라벨리 추가 지침>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

구 분	2019	2020
유기농 식품 라벨링(예시)	없음	

참고 : <https://promotest.ru/federalnyj-zakon-ob-organicheskoy-produkcii>
<https://www.interfax.ru/russia/622467>

(페루) 식품 라벨링 표시 개정사항

- 시행일자 : 2019년 7월 17일
- 변경내용

변경 전

Del Congreso

Este producto contiene <small>Porcentaje del Valor Diario Recomendado</small>	BAJO	MEDIO	ALTO	BAJO	MEDIO
	Energía 220kcal	Grasas 13g	Grasas saturadas 5.9g	Azúcar 0.8g	Sodio 0.7g
	11%	19%	30%	<1%	12%

변경 후

De la Ley de Alimentación



 <small>Ministerio de Salud</small>	 <small>Ministerio de Salud</small>	 <small>Ministerio de Salud</small>	 <small>Ministerio de Salud</small>
EVITAR SU CONSUMO EXCESIVO	EVITAR SU CONSUMO EXCESIVO	EVITAR SU CONSUMO EXCESIVO	EVITAR SU CONSUMO EXCESIVO

	고체음식물	음료	표기
설탕	100g당 22.5g 이상	100ml당 6g	ALTO EN AZUCAR
소금	100mg당 800mg 이상	100ml당 100mg	ALTO EN SODIO
포화지방	100g당 6g 이상	100ml당 3g	ALTO EN GRASAS SATURADAS

- 맨 아래에는 ‘과도한 소비를 피한다’ (EVITAR SU CONSUMO EXCESIVO) 문구 기재

(칠레) 식품 라벨링 표시 개정사항

- 시행일자 : 2019년 6월
- 강화내용

3단계 강화 내용																																				
																																				
설탕	포화지방	칼로리	나트륨																																	
<p>예) ALTO EN GRASAS SATURADAS : 포화지방 높음 Ministerio de Salud : 보건부 (하단표시)</p>																																				
‘18.6 - 기준치 강화(2단계)		‘19.6 - 기준치 강화(3단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영양소별 기준치</th> </tr> <tr> <th>고형식품</th> <th>음료</th> </tr> </thead> <tbody> <tr> <td>칼로리</td> <td>300kcal/100g</td> <td>80kcal/100ml</td> </tr> <tr> <td>나트륨</td> <td>500mg/100g</td> <td>100mg/100ml</td> </tr> <tr> <td>설탕</td> <td>15g/100g</td> <td>5g/100ml</td> </tr> <tr> <td>포화지방</td> <td>6g/100g</td> <td>3g/100ml</td> </tr> </tbody> </table>	구분	영양소별 기준치		고형식품	음료	칼로리	300kcal/100g	80kcal/100ml	나트륨	500mg/100g	100mg/100ml	설탕	15g/100g	5g/100ml	포화지방	6g/100g	3g/100m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영양소별 기준치</th> </tr> <tr> <th>고형식품</th> <th>음료</th> </tr> </thead> <tbody> <tr> <td>칼로리</td> <td>350kcal/275g</td> <td>70kcal/100ml</td> </tr> <tr> <td>나트륨</td> <td>400mg/100g</td> <td>100mg/100ml</td> </tr> <tr> <td>설탕</td> <td>10g/100g</td> <td>5g/100ml</td> </tr> <tr> <td>포화지방</td> <td>4g/100g</td> <td>3g/100ml</td> </tr> </tbody> </table>		구분	영양소별 기준치		고형식품	음료	칼로리	350kcal/275g	70kcal/100ml	나트륨	400mg/100g	100mg/100ml	설탕	10g/100g	5g/100ml	포화지방	4g/100g	3g/100ml
구분		영양소별 기준치																																		
	고형식품	음료																																		
칼로리	300kcal/100g	80kcal/100ml																																		
나트륨	500mg/100g	100mg/100ml																																		
설탕	15g/100g	5g/100ml																																		
포화지방	6g/100g	3g/100ml																																		
구분	영양소별 기준치																																			
	고형식품	음료																																		
칼로리	350kcal/275g	70kcal/100ml																																		
나트륨	400mg/100g	100mg/100ml																																		
설탕	10g/100g	5g/100ml																																		
포화지방	4g/100g	3g/100ml																																		
<p>– 영양 라벨링법 적용되지 않는 식품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 꿀, 시럽, 나트륨, 포화지방 미첨가 식품, 선수용 건강 보조식품 *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포장되어 대량 또는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조리된 식품 * 영유아 식품(판매용, 설탕 첨가된 제품 제외), 곡물로 만든 영유아 식품(설탕 첨가된 제품 제외), 의료 또는 치료의 목적을 위한 제품 																																				

[태국] 한-아세안 FTA 관세율 면제 및 감면 변경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태국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를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2019년 7월 12일 관보 공지.
-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정과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력협정의 기본 협정 의정서, 태국 국왕 승인 법률 No.8(1987년)에 의해 개정된 관세 법령 제 14항(1987년) 무역관련 부록 2, 제 7조에 따라 관세특혜를 새롭게 규정.
- 태국 재무부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 특혜 세율 목록 3을 취소하고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 3으로 대체.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
- 아래 개편된 세율 목록 3 번역본 참조
-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 상호대응세율(한국에서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조정에 따른 태국 측 관세율 조정내용.

- 주요 해당 수출품목

구분	신선딸기	당류 (올리고당, 요리당, 물엿 등)	멜론	간장	양송이버섯	어묵
당초(%)	50	30	30	30	40	20
변경(%)	5	5	5	5	5	5

* 고추장, 된장 5%

- 태국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 (HS Code 4, 6, 8 자리 입력 후 검색가능)
http://itd.customs.go.th/igtf/th/main_frame.jsp?lang=th&top_menu=menu_ho_mepage¤t_id=5028

(UAE) 수입신고 주요내용

수입신고	- 각 토후국의 관할 세관을 통해 수입 신고 진행			
	- 서류심사를 거쳐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검사 면제 여부 판단			
	녹색절차	서류검사 대상		
	황색절차	서류검사 및 화물검사 대상		
	적색절차	서류검사, 화물검사, 정밀검사 대상		
관 세	- UAE의 통관절차에서는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 전 관세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검역제도	- 식품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검사 빈도 및 절차 상이 ¹⁾			
		적색절차	황색절차	녹색절차
	고 위험 식품	80-100%	0-10%	0-10%
	중 위험 식품	15-25%	15-25%	50-70%
	저 위험 식품	5-10%	0-5%	85-90%
통관절차	- 수입식품등록->수입신고->관세납부->관능검사->정밀검사->물품반출			
라벨링				
	※ 필수표기사항			
1) 제품명	2)식품성분(원료)	3) 영양소 라벨	4) 용량	5) 업체명 및 주소
필수	필수	일부유형필수	필수	필수
6) 원산지	7) 일자	8) 보관방법	9)섭취방법	10)Lot 번호
필수	일부유형필수	일부유형필수	일부유형필수	일부유형필수

1) 녹색절차의 빈도는 서류 검토에 대한 빈도를 의미함, 적색 절차 및 황색절차의 빈도는 추가 화물 검사의 빈도를 의미함

(아르헨티나) 통관절차 개정사항

- 시행과정 : 2017년 7월 국회 승인(법령 1079/2016) 후 테스트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
- 목 적 : 아르헨티나에서 이뤄지는 무역 행위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등 무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전산화 및 통일화
- 개선내용 : 수출입 수속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수출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통관 기능 개선
- 사용방법
 - ① 연방조세청 홈페이지(<http://www.afip.gob.ar>)에 접속 후 세금코드(Clave Fiscal : 연방조세청이 안전한 이용을 위해 만든 고유식별코드)를 사용해 로그인
 - * 세금코드 발급 참조 : <https://servicios1.afip.gov.ar/genericos/guiasPasoPaso/VerGuia.aspx?id=46>
 - ② 로그인 후 화면 좌측에 위치한 행정서비스(Servicios Administrativos) 메뉴를 통해 조세코드 관리자(Administrador de Relaciones de Clave Fiscal) 코너로 이동
 - ③ 로그인한 사람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서비스 등록하기(Adherir Servicio)를 선택함. 만일 제3자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등록(Nueva Relación)을 선택함. 이후 AFIP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행
 - ④ 서비스 메뉴에서 VUCE를 클릭한 후 Conexión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함



VUCE에 대한 정보 확인 : <https://www.argentina.gob.ar/vuce>

[일본] 검역제도 강화

□ 식품검역 강화('18.10.1~)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오는 10월1일자로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산 식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내용발표
 - 주요 대상은 모든 신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임.
 - 이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 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 EMS,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등으로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 필요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중요한 안내 말씀

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뒷면 참조)

* 과실, 야채, 곡물 등 이외에 절화(꽃가지), 종자, 모목이나 식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의 일부(드라이 플라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수입 검사의 수검은 필요) 및 검사증명서와 수입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 (뒷면 참조)

2018년 10월 1일 이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식물은 폐기 처분대상입니다.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및 수입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병해충 침입 경계실시증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農林水産省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

- 지중해 과실파리와 굴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과실·과채류(감귤류, 랑고 등)
- 코드린나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과와 체리 과실 등

* 그의 일본 미발생으로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많은 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지중해 과실파리


굴과실파리


코드린나방

◆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 (▲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

- 울금 및 두종의 건조된 식물
- 아몬드, 캐슈넛, 코코넛, 후추, 피스타치오, 호두 및 마카다미아의 건조된 종자 (재배용은 제외)

◆ 검사증명서의 첨부 및 수입검사의 수검이 불필요한 것

- 제재
- 제다
- 알코올, 초산, 설탕에 절인 된 식물 등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주요 연락처

●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81-45-211-7153
● 나고야 식물방역소	+81-52-651-0112
● 고베 식물방역소	+81-78-331-2386
● 모지 식물방역소	+81-93-321-2601
● 나하 식물방역사무소	+81-98-868-2850

✉ 연락처 https://www.contactus.maff.go.jp/j/pps/form/qa_e.html

□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19.11.30)

- 후생노동성은 신선농산물등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개정하여 일부 한국산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강화(2019.5.30.자)
- 기준치 강화 개요
 - 대상품목 : 파프리카(피망류), 고추류, 참외 등
 - 농약성분 : TEBUFENPYRAD(살충제)
 - 강화수치 : 파프리카(0.5ppm→0.01ppm), 참외(0.1→ 0.01), 고추(0.5→0.01)의 일률기준치로 강화 적용됨

- 기준치 강화 적용일 : 2019.11.30자
 - 기준치가 강화되는 경우 6개월간 적용일 유예조치를 취함
 -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강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과거 3년간의 한국산 파프리카류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0.02ppm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개정이후 만약 0.02ppm수준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 정지 발표('19.10.11 ~)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장 급증 원인이 조개 젓갈류로 판단되어 한국 식약처가 조사 발표한 A형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정지 조치를 발표함(10.11자)
- 한국산 조개젓갈류 : 40제품 / 중국산 수입제품 : 4제품
- 검역소에서는 해당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되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또한, 유전자 검출 제품 이외에도 동일 유형의 제품이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검사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시 됨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0556799.pdf>

(대만) 신선 키위 수출검역 요건 마련('19.12.3)

- 對 대만 수출 신선 키위(학명: *Actinidia* spp.)의 검역 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 및 절차가 진행됨
- 수출 농가 요구 사항
 - 수출 농가는 한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이하 APQA)에 등록되어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의 요청 시 생산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APQA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등록된 수출 농가가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사해야 함
 - 수출 농가는 아래의 해충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충의 방제 조치 기록을 보관해야 함. 기록에는 이름, 활성 성분, 사용 일자 및 성장기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의 농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통제 조치가 필요한 해충 목록
<i>Pseudomonas syringae</i> pv. <i>syringae</i> / <i>Pseudomonas syringae</i> pv. <i>morsprunorum</i> / <i>Pseudomonas syringae</i> pv. <i>actinidiae</i> / <i>Diapotha actinidiae</i>

- 선과장(Packing House) 요구사항
 - 수출 선과장은 APQA에 등록되어야 하며, APQA는 선과장의 이름, 등록번호, 주소를 BAPHIQ에 매년 또는 8월 말 이전에 제공해야 함
 - 선과장에는 APQA 직원이 검역 조사, 해충 식별 및 기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충분한 조명, 공간, 관련 기구 및 장비, 해충에 의한 손상된 그림 삽화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포장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과장 운영자는 시설 내부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해충 방제 조치와 필요한 경우 청결을 위해 소독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선과장은 검역 병해충에 의해 감염된 과일을 식별하고, 대만 수출 키위 선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해야 함. 또한, 기술자의 교육 기록 또는 관련 정보는 감사를 위해 선과장에 보관해야 함
 - 선과장은 종합 관리 작업 매뉴얼과 포장 기록을 설정해야 함. 대만으로 수출

되지 않는 키위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가공되는 경우, 대만 수출용 키위와 분리되는 공간이 필요하며, 대만 수출용 키위와 동시에 포장할 수 없음. 단, 조 건부에 따라 국내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일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음. 포장 기록은 감사를 위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대만 수출용 키위는 선과장 내에서 포장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깨끗한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또한, 토양, 가지, 잎, 잡초 종자 및 기타 식물 잔류물이 부착되어 손상되거나 변형되거나 해충으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키위는 폐기해야 하며, 폐기될 과일은 뚜껑이 달린 용기에 담아 버리고 매일 폐기 또는 처리해야 함
- 각 포장 상자에는 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수출 검사 절차

- 수출 검사 작업은 선과장 내에서 수행하며, APQA는 포장된 과일을 검사하고 포장된 상자의 이름, 등록 번호 등을 확인 후 각 로트(lot)에서 2% 이상의 샘플을 조사해야 함. 검사 중 살아있는 검역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로트 (lot)를 대만으로 수출해서는 안 됨
- 대만 수출 검사를 통과한 키위는 APQA가 발행한 식물 위생 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s)가 첨부되어야 함. 식물 위생 증명서는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 코드번호와 키위가 ‘한국에서 대만으로 신선한 키위 과일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다고 명시해야 함

○ 수입 검사 절차

- 수입 검사 절차, 방법 및 샘플링은 대만의 “식물 보호 및 검역법(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 및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수입품에 APQA가 발행한 식물 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식물 위생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러한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식물 위생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됨. 또한, 토양, 가지, 잎, 잡초 종자 및 기타 식물 잔류물

이 부착되어 있거나 식물 위생 증명서 미첨부, 승인된 선과장에서 선별되지 않은 키위는 수입할 수 없음

○ 현장 감사

- 이 검역 요건이 시행되면 APQA는 수출 농가의 검사 기록과 선과장 목록을 제공하여 BAPHIQ가 수출 농가, 선과장 및 키위 수출 검사 작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초청하며 감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 키위 수출 농가 또는 선과장에서 검역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 시, 해당 농가 또는 선과장의 수출 자격은 APQA에 의해 중단되며, APQA는 원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함

○ 기타 요구 사항

- 한국에서 대만의 농업 생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해충 발생 시 언제든지 한국산 키위의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
- 한국의 해충 상태 변화 및 한국산 키위에서 차단된 해충에 따라 BAPHIQ는 추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해충 목록 및 관련 검역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APQA와 논의 할 수 있음

* 규정 원문보기('19.12.3)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20026>

(베트남) 식품 첨가물 규정 변경

- '19.10.16 베트남 식품 첨가물 신규 시행령 발효
 -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관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부록이 추가되어 개인 및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줌
 - 용어의 구체화
 - 과거 영단어의 베트남어 설명으로만 적혀있던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었음. 예를 들어 풍미(짠맛, 단맛 등)를 내는 첨가물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며 해당 첨가물들을 국제 명칭 및 번호 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화하려는 모습이 보임
 - 식품군 코드 명시
 - 베트남에 빵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이전 법령은 식품군 코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신규 시행령에는 식품군 코드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에 수출되고 있던 빵 속의 첨가물들의 함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첨가물 함량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수출이 되었던 빵 품목들이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첨가물 함량이 상위코드를 따라가게 되어 첨가물 함량이 초과된 빵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림.
 - 첨가물 양 최소치 기입 의무화
 -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첨가물 양의 최소치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베트남 국민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출처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ien-te-Ngan-hang/Thong-tu-24-2019-TT-NHN-N-tai-cap-von-duoi-hinh-thuc-cho-vay-lai-theo-ho-so-tin-dung-364203.aspx>

[태국]신선 농산물 수출조건

◆ 품목 :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 (수입허가) DOA에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함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요건)
 - ① 수출과수원의 요건
 1. 수출 개시 전 수출과수원을 등록
 2. 등록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GAP를 받아야 함
 - ② 수출선과장의 요건
 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선과장을 등록
 2. 수출선과장은 선과, 손질 및 포장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고 문서화된 SOP를 비치
 - * 향후 수출지원과에서 SOP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 예정
 3.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등” 이라 한다)은 선과장 등록 전에 현장 실사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 ①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
 1. 태국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본부장등에게 신청
 2.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 결과 및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②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
 1.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본부장등에게 신청
 2.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현장 실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 결과 및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포장 및 라벨링)
 - ① 다음 정보는 각 포장 별로 영어로 표기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과수원 등록 번호

- ② 복숭아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각 상자마다 “EXPORT TO THAILAND” 표기가 보이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EXPORT TO THAILAND” 스티커를 각 단면에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을 허용함
- ③ 목재 포장 상태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은 관련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표준(ISPM)을 준수

○ (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증에는 다음 부기 사항 기재

“The consignment of (생과실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생과실명) fruit from Korea to Thailand.” ((생과실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생과실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이다)

② 화물용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해상 화물에만 해당)를 식물검역증에 표기

○ (수입검역)

- ① DOA는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음
 -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음

◆ 품목 : 참외(멜론)

○ (포장 및 라벨링) ①~③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와 동일

- ④ 각 화물은 수확기부터 수출 개시까지 해충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새로 수확한 과실은 선과장 운송 및 포장 전 저장 기간 동안 방충망 또는 플라스틱 방수포(plastic tarpaulin)로 덮어야 함. 과실은 수확하고 24시간 내에 포장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1. 참외(멜론)는 구멍이 없는 상자에 담아야 함. 또는
 - 2. 상자에 담긴 멜론은 망태(망자루)에 넣어 봉하거나,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야한다.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또는

3. 참외(멜론)는 상자에 담아야 하고, 상자 포장 시 모든 환기구는 그물망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또는
4. 포장된 상자를 팰릿(pallet)에 적재하거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 상자 묶음은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거나 플라스틱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을 사용할 경우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 (수출검역 및 증명)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와 동일

○ (모니터링 및 트랩 조사)

- ① 지역본부장등은 식물 병해충에 대해 수출농가(온실)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함. 지역본부장등은 수출농가(온실)과 식물(과실 포함)을 착과 시점부터 수확 완료 시점까지 최대 2주 간격으로 조사
- ② 지역본부장등은 착과 시점부터 수확 완료 시점까지 수출농가(온실) 내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McPhail 트랩(또는 우려병해충에 사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을 설치 유지해야함. 트랩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
 - 0.2ha 미만 수출농가(온실) : 2개
 - 0.2~0.5ha 수출농가(온실) : 3개
 - 0.5ha 초과 1.0ha 이하 수출농가(온실) : 4개
 - 1ha 초과 수출농가(온실) : 1ha 당 4개 설치
3. 지역본부장등은 2주에 1번씩 모든 트랩을 점검해야함. 호박과실파리 한 마리가 잡히는 경우 수출농가(온실)은 해당 해충이 박멸되었음이 트랩을 통해 확인될 때까지 등록 자격을 잃게 됨

○ (수출검역 및 증명)

- ① DOA 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농가(온실), 선과장,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모니터링, 트랩 데이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함
-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DOA 검역관과 공동으로 수출 화물을 검사. 1000개 이하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
- ③ 별첨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단계(stage)가 수출 조사 중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물은 태국 수출이 거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조사를 통과하고 식물 검역증을 동봉한 화물은 태국 수출을 허용한다. 감염된 수출농가(온실)에서 재배된 참외(멜론)는 남은 수출 기간 동안 태국 수출 승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
 2. 과실파리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수출을 철회

④ 별표1에 명시된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식물 검역증을 발급하고, DOA 검역관은 해당 식물 검역증의 빈 공간에 사인해야함

⑤ 식물검역증에는 다음 부기 사항이 기재

“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melon fruit from Korea to Thailand.” (참외(멜론) 과실 화물은 한국산 참외(멜론) 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이다.)

⑥ 화물용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해상 화물에만 해당)를 식물검역증에 표기

○ (수입검역)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와 동일

◆ 품목 : 감귤

○ (수송방법), (수입허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요건),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포장 및 라벨링), (수출검역 및 증명), (수입검역)
-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와 동일

○ (오렌지더듬이병 관리방안)

①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은 아래의 관리방안에 따라 이행해야 함

1. 과실은 적절한 시기에 오렌지더듬이병 방제프로그램(살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생산지에서 재배된 과실이어야 한다.
2. 재배 기간 동안 과실 생산지에서 공식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과실에서 오렌지더듬이병의 병징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오렌지더듬이병의 병징이 발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된 과수원의 해당 수출 연도 태국 수출을 승인할 수 없다.
3. 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과실의 각 표본 샘플은 임의로 채취되고, 오렌지더듬이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되어야 한다. 오렌지더듬이병의 병징이 발견되는 경우 감염된 과수원산 과실은 해당 수출 연도에 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4. 과실은 다음 처리 방법 중 최소 하나 이상으로 라벨 지침에 따라 세척하고, 손질하고 표면 세척되어야 한다.
-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최소 2분 이상 과실을 완전 침지한다. 용액은 pH 6.0-7.5으로 유지한다.

- 전체 용액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으로 과실을 완전 침지한다. 가시적 발포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비누 또는 세척제가 용액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 45초 동안 침지하고, 첨가되어 있지 않는 경우 1분 동안 침지한다.
- 85 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 동안 과실을 완전 침지한다.

5. 과실은 포장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소독제로 라벨 지침에 따라 소독 처리해야 한다.

- Imazalil
- Thiabendazole

6. 과실에 왁스처리 해야 한다.

7. 제5항에 명시된 필수 선적 전처리에 대한 상세 처리 사항을 식물 검역증에 부기해야 한다.

○ (수출검역 및 증명)

①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함.

1. 오렌지더듬이병의 병징이 발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된 과수원의 해당 수출 연도 태국 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감염된 과수원산 과실은 해당 수출 연도에 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2. 오렌지더듬이병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수출을 철회한다.

② 해당 식물검역증에는 다음 부기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 “The consignment of citrus fruit was produced in Jeju Islan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citrus fruit from Korea to Thailand.” (“감귤 과실 화물은 한국산 감귤 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이다.”)
2.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undergone surface sterilization and fungicide treatment.” (“화물 내 과실은 표면 소독 및 살균 처리되었다.”)

③ 화물용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해상 화물에만 해당)을 식물검역증에 표기해야 한다.

○ (수입검역)

① 태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수입 검역 중 발견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오렌지더덩이병(*Elsinoë australis*)이 발견되는 경우
 - 오렌지더덩이병의 병징이 발견되는 경우, 감염된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즉시 보고한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남은 수출 시점 동안 감염된 과수원에서 재배된 감귤의 태국 수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 오렌지더덩이병 발견 이력이 있는 과수원 재배 감귤의 경우 화물은 태국 수입이 거부된다.
2. 오렌지더덩이병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②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태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의 살아있는 유기체(organism)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생물체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생물체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③ DOA는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도어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 (국외생산지검역) ①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덩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신규 수입 프로토콜에 따라 수출 개시로부터 3년 연속으로 식물검역관을 대한민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반드시 적절한 검역병해충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인도네시아] 신선 농산물 수출조건

□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

-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승인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①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시,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만 제출필요
- 검사실험실 승인 시,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 및 분석증명서(COA) 제출필요

* 수출국의 식품안전 정책, 규정, GAP목록, 모니터링 시스템, 생산자·수출업체 목록 등 국가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

※ 출처 :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16.2.17시행) 번역본

- 한국의 경우, '농관원' 에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받아 수출 중

- '16.1.22 총 10개 실험실 승인 :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 9곳

- 유효기간은 3년이며('19.1.21), '19년 1월 24일 갱신완료

- 수출업체는 아래 4가지 자료를 바이어에 전달 후 바이어는 통관 진행

① 농관원 분석증명서(COA), ② 수출검역증, ③ 원산지증명서

④ Prior Notice(사전신고) 사이트 내 검역증 번호, COA번호 입력 후 출력본

* <첨부2> 對 인도네시아 수출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절차 참조

□ 수출가능한 신선 품목 22개로 제한

- '19.1.24 인니에 등록된 10개 실험실(농관원 시험연구소, 9개 지원 분석실) 중 농관원 시험연구소만 갱신해 주었으며, 갱신사실 통보와 함께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국은 22개 품목)

* 2016~2018년까지 분석성적서 발급 이력이 있지만 22개 품목 목록에서 누락된 3개 품목(배추, 무, 키위)에 대한 추가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인니측에서 불가함을 통보(공식적인 품목 등록 절차를 통해서만 품목 추가 가능)

<첨부1>

분석성적서(COA) 발행 가능한 22개 품목

	품목명(영문)	품목명(한글)
1	Grapes	포도(꺾터)
2	Apple	사과(꺾터)
3	Rice	쌀(꺾터)
4	Citrus Fruit	유자
5	Chili Peppers	고추(꺾터)
6	Chili Peppers(dried)	건고추
7	Sweet Corn(corn on the cob)	옥수수(대가 있는)
8	Sweet Corn(Kernel)	옥수수 알갱이
9	Mushrooms	버섯류
10	Oranges	오렌지(꺾터)
11	Mandarin	감귤(꺾터)
12	Potatoes	감자(꺾터)
13	Cabbage	양배추
14	Soybean	콩(대두)
15	Melon	멜론(꺾터)
16	Peach	복숭아
17	Persimmon	감
18	Pear	배
19	Sweet Pepper	파프리카
20	Strawberry	딸기
21	Maize Flour	옥수수 가루
22	Tea(Green and black)	차(녹차, 홍차)

<첨부2>

對 인도네시아 수출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 수출 절차

○ 분석 신청(수출업체) 및 시료 수거(농관원 지원·사무소)

-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
- 안전성 담당자가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 분석실로 송부



○ 분석결과 통보

- (수출 적합) 지원 품질관리과에서 분석성적서 발급
- (수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수출 적합한 경우)

○ 사전신고(수출업체)

- ①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IAQ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www.karantina.deptan.go.id/> 혹은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인도네시아 도착 전 경유를 하는 경우,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함께 신청
- ② 사전 신고를 하는 경우, remart란에 분석증명서, 식물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기입
(신고서 작성 시 의무는 아니며, 분석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최장 14일 보류)



○ 사전신고서 발급(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 사전신고서(경유지 사전신고서 포함)와 분석성적서 제출하고 수출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심사(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 (사전신고서) 원산지코드와 바코드 일치여부
- (분석증명서) 등록된 실험실에서 발행됐는지 여부, 기타 인도네시아 측 식품안전기준 준수여부

↓(유효성 합격)

○ 사전신고 정보와 농산물의 일치여부 검사(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규정 준수)

○ 검역 통과

[일본] 한국산 모니터링 강화

□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산 수산물 모니터링 강화(19.5.30 ~ 10.30)

- 일본 후생성은 한국산 광어 및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함(2019.5.30.자)
- 6월 부터 한국산 광어 및 일부 조개류, 성게에 대한 위생검사를 전국 검역소에서 강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019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추가 감시계획을 각 검역소에 지시함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조치 내용>

- 한국산 생식용 양식 광어의 쿠도아충(Kudoa septempunctata) 모니터링검사 대상을 수입 신고 건수의 20%(현행)에서 40%로 상향조정
 - 원 인 : 광어에 쿠도아라는 기생충이 발견되어, 일본 내에서는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음
 - 검사건수 : 생식용 광어(냉동제외) 현행 연간 299건에서 → 598건으로 강화
 - 생식용 냉장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의 장염 비브리오 모니터링 검사 대상을 수입 신고건수의 10%(현행)에서 20%로 상향조정
 - 원 인 : 작년도 수입 성게로 인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일본 내에서 발생.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위험도가 높은 동종 식품 검사 강화 조치함
 - 강화기간 : 2019.6.1.- 6.30(1개월간) - 검사대상 : 전 국가 수입품
- ※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비율 100% 적용이 가능(명령검사),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검사 비율 확대 가능성을 시야에 두고 순차적으로 조치
- ※ 2차례 연장 후 10월이후 강화내용 없음

□ 한국산 김치류 피클 제품 분류 동향(2019 ~)

- 일본 세관당국은 한국산 김치에 첨가된 초산 함유량을 문제 삼아 종래의 김치 분류에서 관세가 상향 조정되는 피클로 분류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주의가 필요시 됨

- 야채 절임류에 초산 함유량이 0.5%를 초과할 경우 피클로 분류되어 종래의 김치 9% 관세에서 12%로 상향 부과됨
- 대부분의 김치류는 초산을 함유하지 않고 유산 등이 자연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일본내 수입업체의 경우 유통상의 산도조절을 위해 초산을 미량 첨가하는 사례가 있음
- 해당 업체의 경우 당초 세관 분석기관에서 총 산도 함유량이 0.5%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피클로 분류 판정받은 바, 수입업체측에서 일본내 공인 분석기관에 독자적으로 분석 실시한 결과 순수한 초산 함유량은 극히 미량으로 판명되어 이후 김치로 환원 재분류된 사안이 있음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분류별 관세번호 및 관세율
 - 김치 : 2005.99-999(비밀폐용기), 관세율 9%
 - 피클 : 2001.90.290, 관세율 12%
-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0556799.pdf>

[홍콩]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7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

- 「식품 불순물 (금속 오염) 2018년 개정안」 2019년 11월부터 시행
 - 식품의 금속성 오염에 대한 개정된 표준을 규정하는 「식품 불순물(금속 오염) 2018년 개정안」이 2019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
 - 개정안에 따라 규제되는 금속은 바륨, 붕소, 구리, 망간, 니켈, 셀레늄, 우라늄 등 7종이 추가되어 총 14종이며, 식품 내 금속 오염 물질 최대 허용량은 식품에 따라 다름

기존(7종)	변경(14종)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주석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주석, 바륨, 붕소, 구리, 망간, 니켈, 셀레늄, 우라늄

- 유통 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예: 신선 과일·채소 및 주스류, 신선육류 및 가금류, 수생 동물, 가금류알)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일반 식품은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 상세정보 : 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PA_Food_Adulteration_Metallic_Contamination.html

(대만) 식품 내 잔류 농약 허용치 개정안(19.11.6)

○ 식용작물 잔류농약 허용량 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개정

- 아미설브롬(Amisulbrom) 등 10가지 농약의 16개 성분 잔류 허용량이 개정됨

<식품 내 농약 잔류 허용치 추가 목록>

농약 명칭	작물유형	허용량(ppm)	비고
아미설브롬(Amisulbrom)	십자화과채류	1.0	살균제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패션프루트	0.5	살균제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패션프루트	1.0	살균제
에톡사졸(Etoxazole)	패션프루트	0.2	진드기제거제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패션프루트	0.1	진드기제거제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패션프루트	1.0	살충제
플루오피람(Fluopyram)	십자화과채류	2.0	살균제
	구기자	0.4	살균제
	가지	0.4	살균제
	페피노	0.4	살균제
	양상추	2.0	살균제
	고추	0.4	살균제
	나무토마토	0.4	살균제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패션프루트	0.5	살균제
메트코나졸(Metconazole)	인도대추	0.5	살균제

(출처 : <https://www.fda.gov.tw/ENG/lawContent.aspx?cid=16&id=304>)

○ 동물성 식품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개정

- 아зок시스트로빈(Azoxystrobin) 등 9가지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치를 개정함

<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치 추가 목록>

농약 명칭	잔류 부위	동물 유형	허용량(ppm)
아зок시스트로빈(azoxystrobin)	비폴렌(벌 화분)	꿀벌	0.15
카벤다짐(Carbendazim)	비폴렌(벌 화분)	꿀벌	0.45
카보설판(Carbosulfan)	비폴렌(벌 화분)	꿀벌	0.05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비폴렌(벌 화분)	꿀벌	0.1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비폴렌(벌 화분)	꿀벌	0.05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비폴렌(벌 화분)	꿀벌	0.05
메소밀(methomyl)	비폴렌(벌 화분)	꿀벌	0.1
테부코나졸(tebuconazole)	비폴렌(벌 화분)	꿀벌	0.05

(출처 : <https://www.fda.gov.tw/ENG/lawContent.aspx?cid=16&id=497>)

[베트남]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분리확립

○ 건강보조(보호)식품

검사 항목	규 정
건강보조(보호)식품	- 건강보조(보호)식품에 해당되는 상품은 자체발급 제외 식품으로 분류되어 베트남 보건부의 별도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함 - 추가 설명 : 일반식품 외 건강보조(보호)식품의 경우 식품등록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 소관(건강보조(보호)식품은 베트남 보건부 소관) 따라서 건강 관련 인증 서류들을 직접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① 서류준비 : 수출업체 준비서류

- 식품안전증명서, GMP 증명서, Viet GAP 인증서(베트남 보건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있을 수 있음)

② 서류제출(우편발송)

- * 자유판매증명서(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해야함)
 - 1) 수출필증(수출면장)
 - 2)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 영업허가서(신고) 사본 1부
 - 3) 수출 제품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단, 기우, 용기, 포장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 제출)
 - 4)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원본(영문) 1부
- * 식품안전증명서(식약처에서 발급)는 한국 식약처에서 발급 및 공증 후 제출

○ 베트남 식품 위생 관련법

시 행 령	내 용
NO. 155/2018/ND-CP	보건의료부의 국가적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투자조건 관련 규정
NO. 55/2010/QH12	식품안전법
NO. 67/2016/ND-CP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추가
NO. 15/2018/ND-CP	베트남 보건의료부 전문관리분야에 해당하는 식품 규정
NO. 08/2004/TT-BTY	기능성식품 관리에 대한 지침서

(태국) 과일·채소류 수입통관을 위한 GAP 인증서 공증 안내

1. 관련 배경

- ‘19.8.25부터 태국 보건부 공지(No.386)에 의거 Annex 1(별첨) 목록에 해당되는 과일·채소류(48품목) 수출 시 태국 GMP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인증서 제출 항목 추가
 - 기존에는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 강화되며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GAP 등) 제출 필수
 - 태국은 아포스티유(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미가입국으로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에 추가적으로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확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함

•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공증부터 영사확인까지 근무일 기준 5~7일 소요

- 현재, 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처(FDA) 인증리스트에 한국 GAP인증을 등록하기 위해 관련 절차 진행중으로 연내 등록 완료 예상, **최종 공지 후 변경사항이 있을시 추가 안내 예정**
 - * 태국 FDA와 공증받은 GAP인증서(외교부 영사인증 등 제외)만으로 진행가능토록 협의 중으로, FDA 최종 공지 이후 업데이트 예정

2. 인증절차

- (1단계)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
 - GAP 인증서(영문)를 수출국(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업체를 통한 원본대조 공증 후 영사확인(한국 외교부, 주한 태국 대사관) 필수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공증서류 3부 필요
 -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부터 영사인증 까지 원스탑 대행 서비스 접수 가능(서비스 요금은 업체마다 상이)
 -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 전국 공증인 사무소 리스트 참조
 - * URL :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 (2단계) 한국 외교부 영사인증
 - 한국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영사확인 신청서 및 공증 서류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 오후 2시반 이전 접수 시 당일 발급 가능하나 대행사를 통할 경우 1박 2일 소요

○ 제출서류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신청서 하단 신청업체 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자수입인지

□ (3단계)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

○ 주한 태국대사관(서울 한남동)에서 대사관 영사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주한 태국대사관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2:00, 13:00~15:00 (태국대사관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영사인증 신청서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수수료 : 서류 한 부당 22,000원(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박 4일 소요(공휴일 제외)

3. 공증 서류 사용기한

□ GAP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수출업체가 한국에서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류를 바이어에게 전달, 수입통관 시 바이어가 FDA 담당자에게 인증 서류 보여주고 회수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4. 관련 사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 인도네시아 할랄²⁾인증 의무화법 시행경과

-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기존에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 예고
- 할랄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신설되었으며, 2019년 5월 시행령 31호가 발효되면서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 할랄인증 업무시작

할랄인증청(BPJPH) 기능	
-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감독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절차
 -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
 - ②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 ③ 할랄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④ 할랄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전달
 - ⑤ 할랄인증청은 MUI(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인증서 발급

□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모든 수입식품의 할랄인증이 의무
- 돼지, 알코올 등 하람³⁾성분이 들어간 비할랄 식품의 경우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할랄식품 표기를 하고 수입 및 유통 가능
-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할랄인증 대상이지만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등록 및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할랄인증청의 의견이나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재확인 필요

* 의약품, 화장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 될 예정임

2) 할랄(Halal)이란 '허용된 것'을 의미
 3) 하람(Haram)이란 '금기된 것'을 의미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규칙 발표 지연으로 인해 업계 혼란 가중
 - 2019년 5월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세부적인 기준인 시행규칙이 2019년 10월 17일 이전에 발표되어야 했으나 현재(2019년 12월 23일)까지 미 발표
 - 2019년 10월 17일부로 기존 할랄인증 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는 신규 할랄인증 접수를 중단하였으며, 신규 할랄인증 기관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해야하나 신청 사이트, 할랄 로고, 인증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희망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